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유인책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까지 명령-강제방식의 환경정책 수단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1990년 이후 부터는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24종이 있다. 징수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된다. (환경부, 2006:250).

<표>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유 형(목적)	현행 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수질,축산),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대기,수질),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등 3대강유역)
환경자원의 보전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대강 유역),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배출저감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예치금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하수도), 손괴자부담금(수도,하수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출처; 환경부. 2007. 「2006 환경백서」



대기 및 수질보전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책

배출부과금제도

우리나라에서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 제도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간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부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중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대기분야의 황산화물 등 9종, 수질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 등 19종 축산폐수 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과 부유물질 2종이다. 또 기본부과금은 대기분야의 황산화물, 먼지와 수질분야의 유기물질(BOD 또는 COD), 부유물질 등 4종류가 있다.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표>와 같다.

<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분 야 별	오 염 물 질	적 용 대 상
대기분야 (2)	황산화물, 먼지	• 수질 및 대기 1~2종 사업장과 팔당특별대책 지역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 역(임진강 유역)안의 3종 사업장-'97년 부터 시행 • 수질 및 대기3~4종사업장 2000년 부터 시행 • 대기5종사업장 면제(수질 5종제외)
수질분야 (2)	유기물질 (BOD또는COD), 부유물질	

경기도, 2007. 「2006년도 경기환경백서」



<표>는 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표>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구분	오염물질	적용대상
초과부과금	축산폐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상기외 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금 산정지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황산화물, 먼지	배출허용 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유기물질 부유물질	(배출허용 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준수감면율 × 폐수재이용감면율 × 사업장별부과계수) - 하수도사용료

경기도, 2007. 「2006년도 경기환경백서」

우리나라의 부과금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유인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출부과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일종의 과징금의 성격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배출부과금의 부과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해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공해세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배출부과금제도는 순수한 경제적 유인책이 아니라 명령적 규제방식의 문제점인 비실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명령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책을 결합시킨 일종의 변형적 규제유형이라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19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제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연 2회 부과된다. 부담금액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소재지역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연식, 등록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당해연도)은 환경개선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분야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용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와 청량음료 주류등의 원료로 샘물을 사용한자가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지하수와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납부된 수질개선부담금중 20%는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되어 지하수자원 보호에 쓰이고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된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의 수질개선 시책 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 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책

① 재활용부과금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2002.2.24)으로 폐기물에 치금제도가 폐지되고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전환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의 2003년도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해 2004년도부터 최초 부과하고 있다.

<표> 재활용부과금 대상품목

대상품목	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4종),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 의약품 등), 스티로폼 완충재(전자제품), 플라스틱 포장재(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등)

환경부, 2007. 「2006 환경백서」

②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비용을 상품에 내재화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담배, 1회용기저귀 등 7개 품목 10종의 제품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며, 폐기물재활용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③ 쓰레기종량제 : 쓰레기종량제는 종래 건물분 재산세 또는 건물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던 정액부과방식에서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의 소비행태 및 쓰레기 배출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4월 1일부터 전국 33개 시 군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은,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하며,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하는 등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깨진 유리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전용 포대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05)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 증가 등으로 10년 ('95~'04) 동안 총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실제 처리비의 43%('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서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는 <표>와 같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종량제에 대한 참여와 협조는 높으나 재활용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표> 종량제 성과

구분	총 배출량 (톤/일)	재활용량 (톤/일)	최종처리 쓰레기(톤/일)	1인당 발생량 (Kg/인·일)
'04년	50,007	24,588	25,419	1.03
'94년	58,118	8,927	49,191	1.33

환경부, 2007. 「2006 환경백서」

소결론-토론

복잡한 외부효과의 문제인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명령-강제방식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경제적 유인책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정책수단이 경제적 유인책으로 대체되기 전에 양 수단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의 개선이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정책의 시행 이후 대기나 수질이 얼마나 정화되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점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몇 가지 경제적 유인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러한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각종 정책수단들이 효율적인 유인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유인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요율이 비현실적이어서 오염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는 것보다 부과금이나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더 큰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화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누차 지적하였듯이 경제적 유인책의 성패의 관건은 각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확립이다. 이것 역시 우리의 경우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이 산업체가 명령-강제방식에 의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조업정지 등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손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될 때에는(문태훈, 1992) 오염의 자발적 억제보다는 오히려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